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6월 1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)

□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 정비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기능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(안 제 1조).
 - 제1조의3 → 제1조의 4, 제1조의4 → 제1조의5
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	○ 생활보장위원회 근거 조례가
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	없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
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새로이 구	성함.
성할 필요가 있는가?	(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**요**지 : 없음

7. 기타 **필요한 사항** : 없음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조의3 및 제1조의4"를 "제1조의4 및 제1조의5"로 한다.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제1조의4제2항"을 "제1조의5제2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596호
의 결	2010. 6. 18
년월일	(제161회)

제출년월일: 2010. 6. 4.

제 출 자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 정비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(안 제1조).
 - 제1조의3 → 제1조의 4, 제1조의4 → 제1조의5
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).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조의3 및 제1조의4"를 "제1조의4 및 제1조의5"로 한다.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제1조의4제2항"을 "제1조의5제2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	제1조(목적)
사업법」 제7조의2, 같은 법 시	
행규칙 <u>제1조의3 및 제1조의4</u> 에	<u>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</u>
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	
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	
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	
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기능) (생 략)	제3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
1.~4. (생 략)	1.~4. (현행과 같음)
5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	<u>5. <삭 제></u>
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	
처리할 사항_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실무협의체) ① (생 략)	제5조(실무협의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	
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<u>제1조의4</u>	
	제2항
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	
제5조(실무협의체) ① (생 략)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	제5조(실무협의체) ① (현행과 같음) ②